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9.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286”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285”를 “2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4”를 “27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9”를 “241”로 하고, 일반직 계 “192”를 “1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5”를 “18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3”을 “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 -----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286</u>	<u>288</u>	+2
·	·	·	
·	·	·	
일반직 계	<u>285</u>	<u>28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4</u>	<u>276</u>	+2
·	·	·	

[별표 2]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9</u>	<u>241</u>	+2
·	·	·	
·	·	·	
일반직 계	<u>192</u>	<u>194</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5</u>	<u>186</u>	+1
전문경력관	<u>3</u>	<u>4</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